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피치 못하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으나 체불 임금등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한 용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도모해왔으나, 현행 규정상 용자 상한액이 사업주당 총 7,000만원, 근로자 1인당 총 600만원으로 많지 않은 편이어서 사업주의 체불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용자 상한액을 사업주당 총 1억원, 근로자 1인당 총 1,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다 폭넓게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2항 전단 중 “7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6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규칙 시행 전 제8조의11에 따른 용자 계약을 체결하여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용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9(융자의 신청) ① (생략)	제8조의9(융자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u>7천만원</u> 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u>600만원</u> 으로 한다.	② ----- ----- <u>1억원</u> ----- ----- -- . ----- ----- ----- <u>1,000만원</u> -----.